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28호**

개선권고 재결

2026년 4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6-003호(석유제품운반선 우성호 · 어선 정진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우성호 · 어선 정진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김**(****. *. ***)

경* *** **** *-*(***)

귀하가 소유하고 선원으로 승선했던 정진호가 2024. 10. 8. 02:00경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소재 대병대도등표로부터 방위 약 120도, 거리 약 2.17해리 떨어진 북위 34도 39분 48초 · 동경 128도 39분 51초 해상에서 우성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침로 약 052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 중이던 피항선 우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침로 약 253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행 중이던 유지선 정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우성호를 발견하지 못해 적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각종 항해 장비의 조작 및 활용법을 숙지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